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제·개정 이유

-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확대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

2. 제·개정 내용

가. 수어 재난방송 제공사업자 규정

-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(KBS)는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한구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, 지상파텔레비전방송(한국교육방송공사 제외) 및 종합편성채널·보도전문채널은 한국수어 통역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(안 제40조제4항)

나. 수어 재난방송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 규정

-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수어를 이용하는 재난방송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(안 제40조제5항)

3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4. 입법효과

-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 강화 및 안전보장 등에 기여

5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